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88호

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해제(일몰) 기한 연장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01호(2022. 7. 14.)로 정비구역 결정·고시된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2월 19일

서울특별시장

1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○ 정비구역 현황

구역명	위치	구역면적(㎡)	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	비고 (최초결정고시)
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	용산구 청파동2가 11-1번지 일대	32,390.4	2028.2.17.까지*	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301호 (2022.7.14.)

*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해제기한 2년 연장

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제1호에 의거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함

3.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(☎02-2133-7188) 및 용산구 재정비사업과(☎02-2199-7466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